

교직원 보수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2011.	3.
개 정	2012.	3.
개 정	2013.	1.
개 정	2014.	2.
개 정	2015.	2.
개 정	2016.	2.
개 정	2017.	3.
개 정	2018.	3.
개 정	2019.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우송학원(이하 “본 학원”이라 한다)이 설립·경영하는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교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 교원(총장을 포함한다)과 직원(기술직과 별정직을 포함한다)(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보수는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수당 및 기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교원 업적평가 결과(교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근무평정(일반직 및 기능직에 한한다. 이하 같다)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기본급 가산금”이라 함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또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한 수당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제외한다).
5. “연구비”라 함은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등 연구와 관련한 경비와 연구에 조력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이와 유사한 급여를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직원의 보수) ①교·직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및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봉을 정한다.
②총장과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교·직원의 기본급) ①신규로 계약하는 교·직원의 초임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과 산 업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신규로 계약하는 교원의 초임 기본급은 [별표 1]을 적용한다.
③신규로 계약하는 일반직원의 초임 기본급은 [별표 2]를 적용한다.
④신규로 계약하는 기술직원의 초임 기본급은 [별표 11]을 적용한다.

제6조(신규 계약 교·직원의 기본급 책정) ①신규로 계약하는 교원 중 계약기간이 2년인 자는 계약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1호봉을 가산하고 계약기간이 3년인 자는 계약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2호봉을 가산하여 제5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②신규로 계약하는 일반직원은 계약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2호봉을 가산하여 제5조제3항을 적용한다.

③신규로 계약하는 기술직원은 계약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2호봉을 가산하여 제5조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2016.02.01.)

④신규로 계약하는 교·직원 중 특별한 경력을 소유자한 자로서 제5조에서 정한 기본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기본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적평가 결과에 의한 등급) 교원업적평가 규정 또는 직원 근무평정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영한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가'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가 120점인 자.
2. '나'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결과의 평균점수가 110점 이상 120점 미만인 자.
3. '다'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결과의 평균점수가 100점 이상 110점 미만인 자.
4. '라'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5. '마'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점수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6. '바'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 초과 80점 미만인 자.
7. '사'등급 : 근무기간 중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가 70점인 자.

제8조(평가결과의 점수 환산) 교원업적평가 및 직원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점수 환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S등급은 120점으로 환산한다.
2. A등급은 110점으로 환산한다.
3. B등급은 100점으로 환산한다.
4. C등급은 90점으로 환산한다.
5. D등급은 80점으로 환산한다.
6. 장려 교·직원은 70점으로 환산한다.

제9조(재계약 교·직원의 기본급) ①재재약을 체결하는 교·직원의 기본급은 기존의 기본급에 제7조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교원은 [별표 3]에서 정한 기본급 가산금 연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직원은 [별표 4] 내지 [별표 11]에서 정한 기본급 가산금 연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하되 가산금은 기존 기본급 기준 상하위 금액 중 기존 기본급과 가까운 기본급의 가산액을 적용한다.

②기술직의 기본급 가산금 연봉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2016.02.01.)

③제6조제4항에 해당되어 신규 임용시 기본급을 다르게 적용한 교직원의 재계약 연봉액은 업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연봉계약제로 전환하는 교원의 기본급 산정)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간제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원과 호봉제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연봉계약제로 전환하는 때의 기본급 산정은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교원은 계약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한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한 호봉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교원은 계약년도 호봉을 기준으로 한 호봉에 2호봉을 가산한 호봉으로 기본급을 책정한다.

제11조(비정년 전임교원의 연봉 책정) ①비정년 전임교원의 연봉 금액은 [별표 12]를 적용하되, 해당 교원의 경력, 직무의 난이도, 특임사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비정년 전임교원이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업적 평가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비정년 전임교원의 재계약시 연봉액은 계약기간 업적 및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산학협력중점교원에게는 취업지도수당과 산학협력수당을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2013.1.1.)

제12조 (보수의 지급) ①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을 월액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신규로 임용되는 교직원이 학과 및 부서 업무 적응 및 학과 발전방안 연구 등의 사유로 임용일 이전부터 업무를 개시할 경우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수 지급일) 교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 (퇴직하는 자에 대한 보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개정2016.02.01.)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본 대학에서 보수 및 연구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현재에 기간제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과 호봉제로 계약하여 재직 중인 교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계약 대상인 교원은 재계약 시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임용 종료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이후인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연봉으로 계약한 자의 기본급은 기존의 기본급으로 한다. 다만 차기 재계약 시의 기본급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적용특례) 제9조는 2012년 3월 1일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별표2>, <별표4> 내지 <별표11>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신규계약 및 재계약 대상자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9조는 2017년 3월 1일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① 제9조는 2018년 3월 1일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신규임용 및 재계약 일반직, 기술직 및 이에 준하는 직원은 2018년 4월 1일부터 [별표 2]에 따라 급여를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9조는 2019년 1월 1일 재계약 대상자부터 적용한다.